

2018년 동구 겨울·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급식지원 신청방법

2018년 겨울·봄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2018년 12월 7일(금)까지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우편신청(“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 ② 방문신청(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	[] 행복도시락
	[] 지역아동센터	[] 학교급식소

※ 시 아동청소년과-8077(2016.06.13.)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개선 계획」에 따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1~6학년)**은 급식지원 시 **도시락 배달**로 지원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읍면동	연락처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만석동	032-770-5771	송림1동	032-770-5864	금창동	032-770-5968
화수1.화평동	032-770-5786	송림2동	032-770-5888		
화수2동	032-770-5809	송림3.5동	032-770-5904		
송현1.2동	032-770-5823	송림4동	032-770-5925		
송현3동	032-770-5846	송림6동	032-770-5945		

※ 동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지원팀 아동급식담당 ☎032-770-6834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의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동반장, 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

-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제출 증빙서류】

지원대상	증빙자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지자체 확인 (지자체 지원 가구만 해당)
④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2개월분*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담임교사 등 추천서

< 2018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60천원	26,638	4,674	27,563
		(28,383)	(4,980)	(29,368)
2인	1,464천원	44,898	20,093	45,603
		(47,839)	(21,409)	(48,590)
3인	1,893천원	58,140	39,561	58,220
		(61,948)	(42,152)	(62,033)
4인	2,323천원	71,140	63,978	71,990
		(75,800)	(68,169)	(76,705)
5인	2,753천원	85,191	86,967	85,882
		(90,771)	(92,663)	(91,507)
6인	3,183천원	98,270	105,723	99,426
		(104,707)	(112,648)	(105,938)
7인	3,612천원	111,556	124,561	112,929
		(118,863)	(132,720)	(120,326)
8인	4,042천원	124,348	141,317	126,004
		(132,493)	(150,573)	(134,257)
9인	4,472천원	137,073	155,188	138,870
		(146,051)	(165,353)	(147,966)
10인	4,902천원	151,539	170,481	153,278
		(161,465)	(181,648)	(163,318)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